

『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지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, 또한 풍수해는 특성상 하천기본계획,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.
-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, 부문별 계획을 총괄 및 조정 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어,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.

3. 주요내용

- 대상범위
 - ◆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구미시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 수립.
- 계획내용
 - ◆ 기초현황 및 풍수해 특성조사,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, 저감대책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.

○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

- ◆ 위험지구는 현재 시점에서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, 인명피해 또는 일정 기준액(1억원)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 가능한 지구
- ◆ 유형별로는 하천재해, 내수재해, 사면재해, 토사재해, 바람재해, 기타재해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

4. 관련근거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 제시의 건은,

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에 의하면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,

○ 아울러,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.

○ 우리시는 상위 관련법령에 의거 하천, 내수, 사면, 토사, 바람, 기타 재해에 대하여, 관내 전역인 615.49 km²에 대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목표년도를 설정(2023년)하였고, 또한 10년마다 수립하며,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.

- '09.03.25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추진 절차를 걸쳐 '12.11.22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, 향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람시 계획수립이 완료됨.
- 조사된 유형별 선정 지구는,
총 56개소로 하천재해위험지구 19개소, 내수재해위험지구 12개소, 사면재해 위험지구 12개소, 토사재해위험지구 11개소, 바람재해 위험지구 2개소 임.
- 지난 태풍 “산바”의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은 반영되었으나, 1공단 하단부의 “깁감단지”, “효성협단”, “코오롱협단”, “새한단지” 4개소는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 상습침수지구로서, 금번 내수 배제 재해위험지구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, 검토 후 추가 반영을 요하며,
-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유인물 page 3 ~ 12까지 요약 되어 있음.
- 아울러 우리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건실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며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